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도이치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도이치 DWS 넥스트 이머징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이치 DWS 넥스트 이머징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도이치 DWS 넥스트 이머징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도이치자산운용(주)
3. 작 성 기 준 일 : 2014 년 2 월 27 일
4.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4 년 3 월 3 일
5. 모집(매출) 증권외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6.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집합투자업자홈페이지→www.dws-korea.com,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8.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외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도이치 DWS 넥스트 이머징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I	종류 C-e	종류 C-W
금융투자협회 펀드코 드	72049	72050	99373	99374	99375	99376	80026	74715	9391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 (주식)

다. 개방형·폐쇄형구분: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구분: 추가형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 조좌

주 1)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판매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판매)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dws-korea.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1) 그 모집(매입)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도이치 DWS 넥스트 이머징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I	종류 C-e	종류 C-W
금융투자 자협회 펀드코 드	72049	72050	99373	99374	99375	99376	80026	74715	9391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07년 7월 30일	최초설정
2009년 5월 3일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도이치 DWS 프리미어 넥스트이머징 종류형 주식투자신탁-자 1 호 -> 도이치 DWS 프리미어 넥스트이머징(Next Emerging)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009년 8월 24일	신탁업자변경 수익자총회 결과에 따라 신탁업자를 기존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하고 신탁업자 보수를 인하함
2010년 3월 10일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운용사 운용전문인력 변경 (변경전 : Rainer Vermehren -> 변경후: Antoaneta Zaharieva)
2010년 3월 16일	매입 기준 가격 적용일 변경 및 선취판매수수료 차등화 시행
2010년 5월 3일	판매보수의 인하
2011년 8월 10일	펀드명 변경 변경전 : 도이치 DWS 프리미어 넥스트 이머징 (Next Emerging)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변경후 : 도이치 DWS 넥스트 이머징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운용사 운용전문인력 변경 (변경전 : Antoaneta Zaharieva -> 변경후: Michael Altintzoglou)
2012년 1월 1일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운용사 변경 변경 전: 디더블류에스 파이낸스 서비스 지엠비에이치 (DWS Finanz-Service GmbH) 변경 후: 디더블류에스 인베스트먼트 지엠비에이치 (DWS Investment GmbH)
2013년 9월 1일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운용사 사명 변경 (합병에 따른 사명 변경) 변경 전: 디더블류에스 인베스트먼트 지엠비에이치 (DWS Investment GmbH) 변경 후 : 도이치 애셋 앤 웰스 매니지먼트 인베스트먼트 지엠비에이치 (Deutsche Asset & Wealth Management Investment GmbH)
2014년 2월 25일	환매연기의 결정
2014년 2월 26일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운용계약 종료
2014년 3월 3일	펀드 보수 인하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도이치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계천로 41 서린동 영풍빌딩 19 층 (대표전화:02-724-7400)

주 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 투자신탁의 업무의 위탁]

해당사항 없음

* 위 해외위탁운용사로의 업무위탁은 2014 년 2 월 26 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기준일 : 2013.07.30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이정원	1974	부장	18	3,038 (억좌)	도이치자산운용 운용팀 (2005.06 ~)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자산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 3)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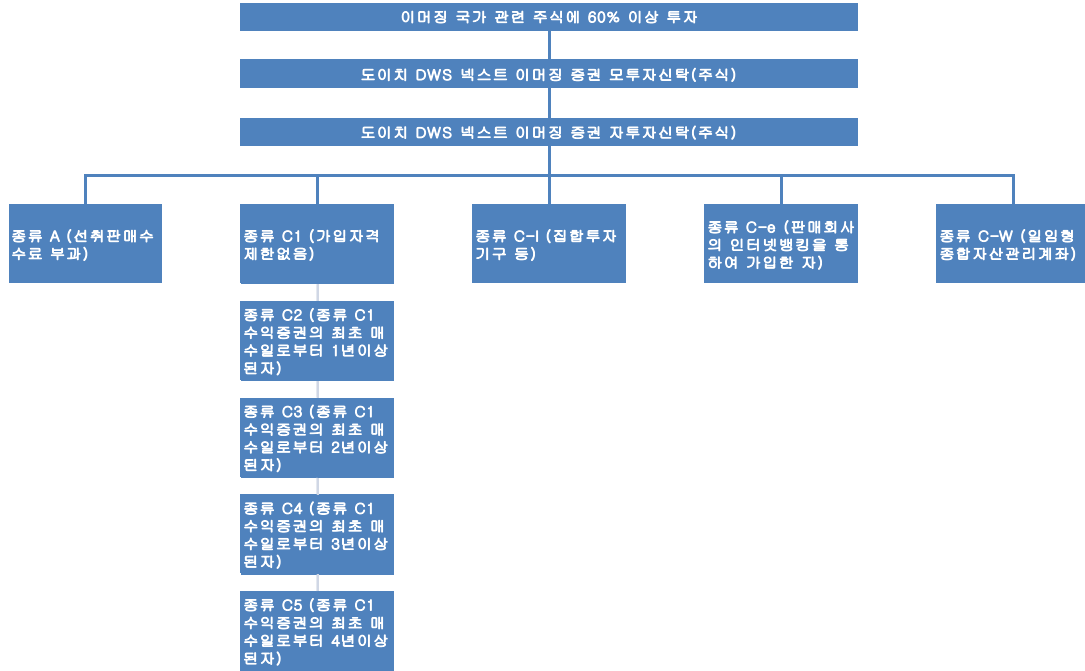
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김상완	2007.10.29-2008.01.21
이정원	2008.01.22-현재

주 1) 작성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 투자신탁, 종류형, 모자형, 추가형, 개방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수료, 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하지만 종류의 수 및 구분에 관계없이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일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운용행위는 종류간의 차별 없이 통합하여 이루어집니다

*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및 종류 C5 수익증권은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 전환 됩니다.

구분		종류 A	종류 C-e	종류 C-I	종류 C-W
가입자격		선취 판매수수료 징구	온라인 가입자	주 5)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최초설정일		2007.07.30	2007.10.11	2008.02.27	미설정
수수료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0% 이내	납입금액의 0.00%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수수료	90 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징구			
투자 신탁 보수 (연간,%)	집합투자업자보수	0.0000	0.0000	0.0000	0.0000
	판매회사보수	0.0000	0.0000	0.0000	0.0000
	신탁업자보수	0.0000	0.0000	0.0000	0.000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000	0.0000	0.0000	0.0000
	총보수	0.0000	0.0000	0.0000	0.0000

구분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가입자격		제한없음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 터 1년 이상된 자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 터 2년 이상된 자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 터 3년 이상된 자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 터 4년 이상된 자
최초설정일		2007.07.30	2011.01.17	2011.01.17	2011.01.17	2011.08.08
수수료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 수수료	90 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징구				
투자 신탁 보수 (연간,%)	집합투자업 자보수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판매회사 보수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신탁업자 보수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일반사무관 리회사보수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총보수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주 1) 판매수수료 (판매시 투자자로부터 받는 금전)는 매입시,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합니다.
- 주 2) 보수 (집합투자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는 순자산총액의 연간 %를 기준으로 하며, 매 3개월마다 지급합니다.
- 주 3) 보수 외의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2 부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4) 단,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1. 집합투자계약 제 25 조의 3(수익증권의 전환)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단, 전환 후 추가로 매수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제 41 조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이 최소보유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해당 추가 매수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 주 5) 종류 C-I의 가입자격
 - 1)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2) 보험회사의 변액보험(특별계정)
 -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 4) 법시행령 제 10 조 제 2항에서 정한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5)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100 억이상 취득하고자하는 개인 또는 500 억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법인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도이치 DWS 넥스트 이머징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자투자신탁	도이치 DWS 넥스트 이머징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 명칭: 도이치 DWS 넥스트 이머징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를 모 투자신탁에 투자)

주요투자대상	주식 60%이상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 5%이하 (단, ETF는 30%까지) 파생상품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이머징 국가 중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한국,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그 밖의 기타 이머징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도 투자하는 주식 투자신탁으로 투자하는 투자대상 종목의 주가 상승 시 자본수익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머징 국가 관련 주식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화 표시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시 통화와 원화 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환헤지를 수행하며 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된 헤지 전략 가. 달러화, 유로화, 엔화 및 파운드화 표시 자산: 목표 환헤지 비율은 투자금액의 50% 이상이며, 시장상황 또는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전망 등에 따라 환헤지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통화 표시자산: 원칙적으로 헤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헤지방법, 헤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운용사가 헤지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헤지 수단 및 비용 주된 헤지수단은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의 통화선물 등을 이용 할 예정입니다.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헤지 관련 거래로부터 발생된 모든 비용 및 그 거래의 결과로 생긴 수익 또는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귀속됩니다. (3) 기타 환헤지 관련 주의 사항

	<p>환헤지란, 통화선물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환 헤지를 하지 않은 경우 투자대상 국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나, 환헤지를 실시하는 경우 오히려 이러한 환차익 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p> <p>헤지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충분히 실행되지 못하여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의 이유로 환헤지를 수행하여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p> <p>※ 상기 헤지전략 및 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환헤지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이머징 국가에 관련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대상국가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이머징 국가 중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한국,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그 밖의 기타 이머징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도 투자하는 주식 투자신탁으로 투자하는 투자대상 종목의 주가 상승 시 자본수익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떤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 내용
1)모투자신탁	100%이하	도이치 DWS 넥스트 이머징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비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단기 대출 및 금융기관예치	10%이하	법 제 83 조 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예치 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

		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투자대상 1)에서 3)까지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주요투자대상

“도이치 DWS 넥스트 이머징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1) 주식	60%이상	<p>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p> <p>이 투자신탁은 이머징 국가 중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한국,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그 밖의 기타 이머징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도 투자하는 주식 투자신탁으로 투자하는 투자대상 종목의 주가 상승 시 자본수익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p>
2)집합투자증권	5%이하	<p>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단, ETF는 30%까지 투자가능, 외화자산에만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 20%까지 가능)</p>

3)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통화나 주식·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통화나 주식·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4) 자본 시장법 시행령 268조 제3항에 의해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 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		
5)기타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상기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적용예외)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 1)의 경우, 아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 1)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해 자투자신탁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 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도이치 DWS 넥스트 이머징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에 적용되는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 후 1 개월 가격변동 등은 3 개월까지(집합투자규약 제 20 조 2 항의 사유)
동일회사 발행주식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단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가격변동 등은 3 개월까지(집합투자규약 제 20 조 2 항의 사유)
파생상품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후 1 개월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가격변동 등은 3 개월까지(집합투자규약 제 20 조 2 항의 사유)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발행주식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 (실질 투자 비중 90% 이상)를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에의 실질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 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해외 유가증권 투자전략

도이치 DWS 넥스트 이머징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이 투자신탁은 이머징 국가 중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한국,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그 밖의 기타 이머징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매매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시장상황에 따른 신속하고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므로 빈번한 매매로 인하여 매매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매매비용의 증가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 MSCI EM Index 95% + 콜금리 5%

(MSCI 지수: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

이머징 지역의 선별된 우량주 위주로 구성하여 지수화한 MSCI EM Index 는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환위험 관리전략

이 투자신탁은 외화 표시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시 통화와 원화 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환헤지를 수행하며 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된 헤지 전략

가. 달러화, 유로화, 엔화 및 파운드화 표시 자산: 목표 환헤지 비율은 투자금액의 50% 이상이며, 시장상황 또는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전망 등에 따라 환헤지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통화 표시자산: 원칙적으로 헤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헤지방법, 헤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운용사가 헤지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헤지 수단 및 비용

주된 헤지수단은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의 통화선물 등을 이용 할 예정입니다.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헤지 관련 거래로부터 발생된 모든 비용 및 그 거래의 결과로 생긴 수익 또는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귀속됩니다.

(3) 기타 환헤지 관련 주의 사항

환헤지란, 통화선물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환 헤지를 하지 않은 경우 투자대상 국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나, 환헤지를 실시하는 경우 오히려 이러한 환차익 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헤지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충분히 실행되지 못하여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의 이유로 환헤지를 수행하여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 상기 헤지전략 및 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환헤지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수익구조

당해 자 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 (실질 투자 비중 90% 이상)를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 투자신탁

도이치 DWS 넥스트 이머징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은 이머징 국가 중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한국,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 국가와 관련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그 밖의 기타 이머징 국가와 관련된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주식이라 함은 해당 국가의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 본사를 해당 국가에 두고 해외에 상장된 기업, 해당 국가와 관련하여 주요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 등을 말합니다.)

-투자위험: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의 주식의 가격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음 투자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주 요 내 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해외주식등 가격변동 위험	개별 해외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운용성과는 동 국가들의 주식의 가격변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환율변동 위험	<p>환위험 관리전략</p> <p>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화 표시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시 통화와 원화 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환헤지를 수행하며 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p> <p>(1) 주된 헤지 전략</p> <p>가. 달러화, 유로화, 엔화 및 파운드화 표시 자산: 목표 환헤지 비율은 투자금액의 50% 이상이며, 시장상황 또는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전망 등에 따라 환헤지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p> <p>나. 기타통화 표시자산: 원칙적으로 헤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헤지방법, 헤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운용사가 헤지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p> <p>(2) 헤지 수단 및 비용</p> <p>주된 헤지수단은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의 통화선물 등을 이용 할 예정입니다.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헤지 관련 거래로부터 발생된 모든 비용 및 그 거래의 결과로 생긴 수익 또는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귀속됩니다.</p> <p>(3) 기타 환헤지 관련 주의 사항</p> <p>환헤지란, 통화선물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환 헤지를 하지 않은 경우 투자대상 국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나, 환헤지를 실시하는 경우 오히려 이러한 환차익 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p>

	<p>헤지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충분히 실행되지 못하여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의 이유로 환헤지를 수행하여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p> <p>※ 상기 헤지전략 및 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환헤지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p>	<p>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는 투자신탁 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유가증권, 파생상품,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개별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 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p>

나. 특수위험

구 분	주 요 내 용
<p>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p>	<p>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유가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p>
<p>국가위험</p>	<p>이 투자신탁은 투자하는 국가 등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또는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위험에 노출됩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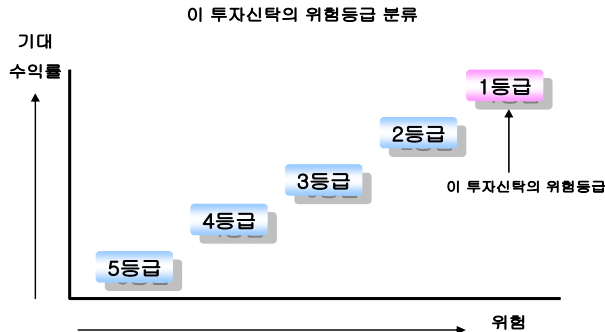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주 요 내 용
<p>환매위험</p>	<p>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결정일까지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p>
<p>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p>	<p>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유동성 위험</p>	<p>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오퍼레이션 위험</p>	<p>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과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기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p>
<p>해외자산 투자관련 가격평가위험</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자산과 관련, 발행자, 자산보관 및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기타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등이 해당자산의 가격 및 수량 등 기준가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잘못 또는 지연하여 공시하거나 통보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러한 사유들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해지 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100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 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 프로세스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 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주로 해외에 상장·등록 또는 거래되는 유가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므로 **5등급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투자신탁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대상 국가의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등급 기준>

등급	위험수준	내용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 이상 투자하는 투자신탁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상 투자하는 투자신탁 -구조화된 파생상품투자신탁(원금보존형 포함)
2 등급	높은 위험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이하 투자하는 투자신탁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하 투자하는 투자신탁
3 등급	중간 위험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30%이하 투자하는 투자신탁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30%이하 투자하는 투자신탁
4 등급	낮은 위험	-국공채 및 회사채 등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5 등급	매우 낮은 위험	-MMF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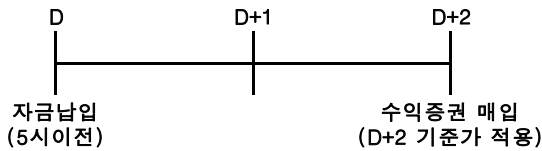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집합투자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류(Class) A 수익증권 : 판매수수료 징구 방법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
2. 종류(Class) C1 수익증권 : 제한없음
3. 종류(Class) C2 수익증권 :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된 자
4. 종류(Class) C3 수익증권 :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된 자
5. 종류(Class) C4 수익증권 :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된 자
6. 종류(Class) C5 수익증권 :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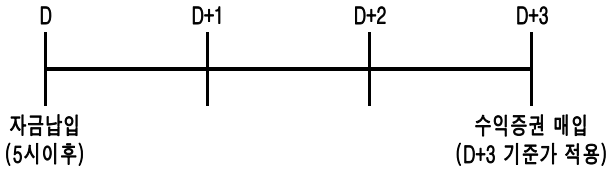
7. 종류(Class) C-I 수익증권 :
 - 1)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2) 보험회사의 변액보험(특별계정)
 -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 4) 법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에서 정한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 5)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100 억이상 취득하고자하는 개인 또는 500 억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법인
8. 종류(Class)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인터넷 बैं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
9. 종류(Class) C-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오후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다)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제 2 부. 12.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가격의 산정을 위해 외화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시점(이하 "평가시점"이라 합니다)에 있어서의 최종시가(또는 "제 2 부. 12.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일의 공정가액)를 사용해 해당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시차가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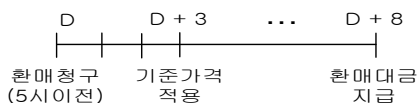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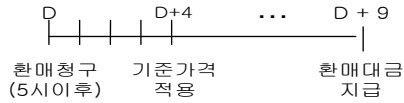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나) 오후 17시 이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다)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 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 (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 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분	지급비율 (연간, %)									비고 (지급시기)
	A	C1	C2	C3	C4	C5	C-I	C-e	C-W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90일 이상 - 없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환매시

주 1) 이익금: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주 2) 단,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1. 집합투자규약 제 25 조의 3(수익증권의 전환)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단, 전환 후 추가로 매수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제 41 조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이 최소보유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해당 추가 매수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의 빈번한 환매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90 일미만 환매를 고려하시는 투자자께서는 이익금의 70%가 환매수수료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회사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규약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17 시[오후 5 시]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7 영업일전일**(17 시[오후 5 시] 경과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8 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1) 수익증권의 전환 절차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전환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및 종류 C4 수익증권의 잔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전환을 청구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종류 C1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당해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C1 수익증권을
 (종류 C1 수익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입 또는 전환된 시기를 불문하고)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종류 C2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당해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C2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입 또는 전환된 시기를 불문하고)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종류 C3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당해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C3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입 또는 전환된 시기를 불문하고)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종류 C4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에
 당해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C4 수익증권을
 (종류 C4 수익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입 또는 전환된 시기를 불문하고)
 종류C5 수익증권으로 전환

종류 C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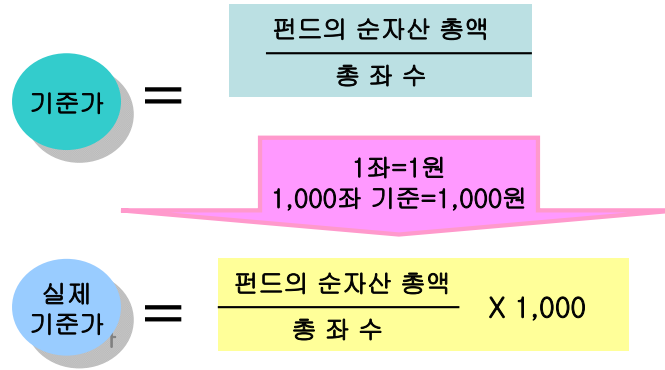
(2) 수익증권의 전환 처리 방법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전환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처리합니다.

- 1) “제 2 부.11.다.(1) 수익증권의 전환 절차”에 따라 수익증권을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전환 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며, 만약 전환일(“제 2 부.11.다.(1) 수익증권의 전환 절차”에 언급된 1 년, 2 년, 3 년, 4 년이 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전환일로 봅니다.
- 2)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전환하는 날의 17 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 수익증권의 전환요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제 2 부.11.다.(1) 수익증권의 전환 절차”에 따라 전환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제 2 부.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로 매수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보유기간이 최소 보유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해당 추가 매수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 4) “제 2 부.11.다.(1) 수익증권의 전환 절차”에 따라 수익증권을 전환하는 경우, 만약 수익자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처리된 이후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될 수 있습니다.
- 5) 판매회사는“제 2 부.11.다.(1) 수익증권의 전환 절차”를 적용함에 있어 그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당해 종류 수익증권]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Class 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간 판매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dws-korea.com):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 2) "제 2 부.11.다.(1) 수익증권의 전환 절차"에 따라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 C1 수익증권의 잔고를 최초로 일괄하여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또는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또는 종류 C5 수익증권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제 30 조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일괄하여 전환하는 날에 공고되는 종류 C1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당해 자 투자신탁

대상자산	평가방법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이 투자신탁의 모 투자신탁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의 평가일에 제공받아 사용가능한 다음 평가금액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평가한다. ① 장외 파생상품의 발행주체가 제공하는 공정가격 ② KIS채권평가에서 제공하는 가격 ③ 장외파생상품의 실제환매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시에는 모투자신탁의 평가 당일 순자산가액(1좌당 기준가격)으로 평가

주 1)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위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나 세부기준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주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주된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평가정책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적어도 1년에 한번 또는 관련규정에 변화가 있을 경우 검토 후 승인.
- 집합투자재산 평가관련 사안들을 경영관리위원회에 보고.
- 비유동성 자산, 장기간 시세가 형성되지 않는 가격, 평가방법변경과 같은 집합투자재산 특정 사안들에 대해 검토 후 승인.
- 유동성, 발행사 위험 요인에 기초해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를 조정.

- 가격누락, 장기간 시세가 형성되지 않는 가격, 시세변동이 큰 가격, 가격변동 허용범위 검토, 거래가격과 평가가격의 비교 등과 같은 예외사항들에 대한 감독을 제공할 MIS보고서 검토.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종류 A	종류 C-I	종류 C-e	종류 C-W	부과시기
가입자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주 5)	온라인가입자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 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0% 이내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전환시
환매수수료	90 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징구				환매시

종류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부과시기
가입자격	주 3)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90 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징구					환매시

주 1) 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합니다.

주 2)종류형 C-W 는 작성일 현재 미설정 종류형 입니다.

주 3) 종류 C1, C2, C3, C4 및 C5 의 가입자격

- 종류(Class) C1 수익증권 : 제한없음
- 종류(Class) C2 수익증권 :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된 자
- 종류(Class) C3 수익증권 :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된 자

- 종류(Class) C4 수익증권 :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된 자
- 종류(Class) C5 수익증권 :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된 자

주 4) 종류 C-I의 가입자격

- 1)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2) 보험회사의 변액보험(특별계정)
-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 4) 법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에서 정한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 5)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100 억이상 취득하고자하는 개인 또는 500 억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법인

*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종류 A	종류 C-e	종류 C-I	종류 C-W	부과시기
가입자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온라인가입자	주 7)	일임형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부과 비율 (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0.0000	0.0000	0.0000	0.00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0000	0.0000	0.0000	0.0000	
	신탁업자 보수	0.0000	0.0000	0.0000	0.0000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0.0000	0.0000	0.0000	0.0000	
	기타비용	0.0021	0.0000	0.0022	-	사유 발생시
	총보수· 비용	0.0021	0.0000	0.0022	-	-
	합성 총보수· 비용*	0.1495	0.1496	0.1424	-	-
	증권 거래비용	0.5768	0.5808	0.5106	-	사유 발생시

구분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부과시기
가입자격	제한없음	종류 C1	종류 C1	종류 C1	종류 C1	

			수익증권 의 최초 매수일로 부터 1년 이상된 자	수익증권 의 최초 매수일로 부터 2년 이상된 자	수익증권 의 최초 매수일로 부터 3년 이상된 자	수익증권 의 최초 매수일로 부터 4년 이상된 자	
투자 신탁 보수 (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신탁업자 보수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기타비용	0.0000	-	-	0.0000	0.0013	사유 발생시
	총보수· 비용	0.0000	-	-	0.0000	0.0013	-
	합성 총보수· 비용*	0.1802	-	-	0.1599	0.1450	-
	증권 거래비용	0.8747	-	-	0.6533	0.5321	사유 발생시

*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종류형 C-W 는 작성일 현재 미설정 종류형 입니다.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에 의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2.07.30 ~ 2013.07.29]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2.07.30 ~ 2013.07.29]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6) 종류형 C-W 수익증권은 작성일 현재 미설정 수익증권으로서 이 종류형의 기타비용, 합성 총보수 비용 및 증

권거래 비용은 종류형 A수익증권의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본 C-W 종류형 수익증권의 설정 후 발생 비용은 상기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주7) 종류 C-I의 가입자격

- 1)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2) 보험회사의 변액보험(특별계정)
-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 4) 법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에서 정한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 5)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100억이상 취득하고자하는 개인 또는 500억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법인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투자기간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종류 A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15	148	185	293
종류 C1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8	58	97	213
종류 C-e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5	48	85	193
종류 C-I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5	46	81	184
종류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0	0	0	0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종류형C1 와 종류형A의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이 되는 시점이나, class유형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종류 C1 수익증권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 1 년 단위로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됨을 가정하여 예상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주 4) 종류 A 및 종류 C-e 수익증권은 2013 년 7 월 30 일을 최초 투자시점으로 가정하여, 보수 계산 기간 별 차등 보수율을 적용하여 예상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 종류형 C-W 는 작성일 현재 미설정 종류형 수익증권 입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단,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 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 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은 해외에서 적정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일정 한도 (14%)내에서 아래의 금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원천 징수세액의 환급 금액은 한국 및 투자대상국가의 조세 정책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환급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 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나)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 적용 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실이 과세됩니다. 다만, 해외상장주식의 비과세 기간중(2007년6월1일 - 2009년12월31일) 발생한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실은 2010년1월1일 이후 2013년12월31일까지 발생한 과세이익과 상계가 허용됩니다.

(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 (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수익증권의 실물양도 등의 방법으로 거래되어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는 이익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 등은 원천징수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본 투자신탁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관련 법 및 규정, 정부 정책, 본 투자신탁 및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본 투자신탁 및 본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 74 조제 3 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투자신탁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투자신탁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의 차이

기준가격 : 투자신탁(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 :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 “(2)투자자에 대한 과세” 참조 - 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 “(2)투자자에 대한 과세” 참조 - 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정보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6기(2012.07.30 - 2013.07.29)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5기(2011.07.30 - 2012.07.29)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4기(2010.07.30 - 2011.07.29)	삼일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대차대조표			
항 목	제 6 기	제 5 기	제 4 기
	(2013.07.29)	(2012.07.29)	(2011.07.29)
운용자산	6,525,523,855	14,070,202,485	16,901,106,414
증권	6,340,236,187	13,973,125,140	16,764,560,736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85,287,668	97,077,345	136,545,678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920,884	45,630,079	1,640,115
자산총계	6,527,444,739	14,115,832,564	16,902,746,529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0,796,046	43,579,496	48,579,050
부채총계	20,796,046	43,579,496	48,579,050
원본	5,567,473,816	13,615,427,074	16,262,807,428
수익조정금	-1,601,665,007	52,338,743	-365,000,218
이익잉여금	2,540,839,884	404,487,251	956,360,269
자본총계	6,506,648,693	14,072,253,068	16,854,167,479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6 기	제 5 기	제 4 기

	(2012.07.30 - 2013.07.29)	(2011.07.30 - 2012.07.29)	(2010.07.30 - 2011.07.29)
운용수익	2,669,052,074	569,054,725	1,190,671,002
이자수익	3,255,710	4,251,090	4,245,221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2,665,796,364	564,803,635	1,186,425,781
기타수익	310,689	263,750	130,275
운용비용	125,337,944	160,761,710	228,219,031
관련회사 보수	125,337,944	160,761,710	228,219,031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3,184,935	4,069,514	5,571,393
당기순이익	2,540,839,884	404,487,251	957,010,853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위 재무재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 항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 3)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식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대 차 대 조 표

[단위:원]

과 목	제 6기 (2013.07.29)		제 5기 (2012.07.29)		제 4기 (2011.07.29)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85,287,668		97,077,345		136,545,678
1. 현금및현금성자산	185,287,668		97,077,345		136,545,678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0		38,490,000		64,740,103
1. 콜론			38,490,000		64,740,103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6,340,236,187		13,934,635,140		16,699,820,633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6,340,236,187		13,934,635,140		16,699,820,633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1,920,884		45,630,079		1,640,115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298,739		258,990		276,205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1,622,145		45,371,089		1,363,910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6,527,444,739		14,115,832,564		16,902,746,529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20,796,046		43,579,496		48,579,05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1,612,936		5,342,111		1,355,936	
4. 수수료미지급금	19,183,110		38,237,385		47,223,114	
5. 기타미지급금	0		0		0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20,796,046		43,579,496		48,579,050
자 본						
1. 원 본	5,567,473,816		13,615,427,074		16,262,807,428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939,174,877		456,825,994		591,360,051	
(발행좌수 당기: 5,567,473,816 좌		2,540,839,884		404,487,251		956,360,269
전기: 13,615,427,074 좌		-1,601,665,007		52,338,743		-365,000,218
전전기: 16,262,807,428 좌)						
(기준가격 당기: 1,000.00 원						
전기: 1,000.00 원						
전전기: 1,000.00 원)						
자 본 총 계		6,506,648,693		14,072,253,068		16,854,167,479
부 채 와 자 본 총 계		6,527,444,739		14,115,832,564		16,902,746,529

다.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단위:원]

과 목	제 6기 (2012.07.30-2013.07.29)		제 5기 (2011.07.30-2012.07.29)		제 4기 (2010.07.30-2011.07.29)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3,566,399		4,514,840		4,375,496
1. 이 자 수 익	3,255,710		4,251,090		4,245,221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310,689		263,750		130,275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665,796,491		681,779,169		1,186,958,033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2,665,796,491		681,779,169		1,186,958,033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27		116,975,534		532,252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127		7,036		14,667	
8. 기타거래손실			116,968,498		517,585	
운 용 비 용		128,522,879		164,831,224		233,790,424
1. 운용수수료	98,604,146		124,365,990		171,536,223	
2. 판매수수료	19,926,682		27,809,727		44,839,466	
3. 수탁수수료	6,807,116		8,585,993		11,843,342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3,184,935		4,069,514		5,571,393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2,540,839,884		404,487,251		957,010,853
좌달순이익(또는 좌달순손실)		0.45637213		0.029708011		0.058846596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억좌,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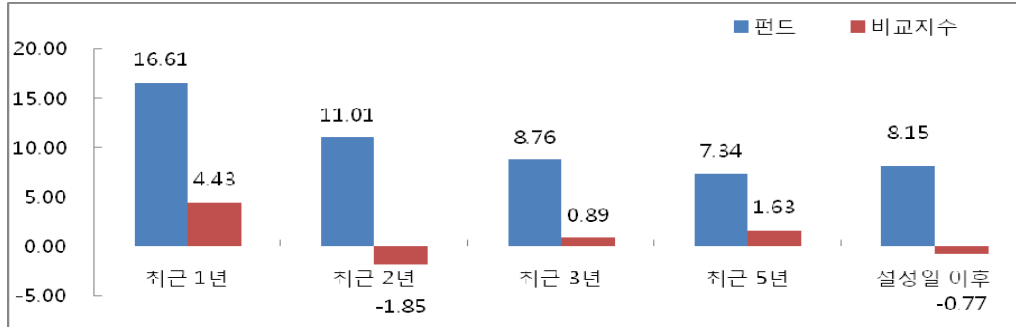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2.07.30 - 2013.07.29	135	135	17	18	97	114	55	65
2011.07.30 - 2012.07.29	161	161	24	24	50	50	135	141
2010.07.30 - 2011.07.29	198	198	50	53	87	93	161	169

종류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A	2012.07.30 - 2013.07.29	15	15	4	4	11	12	8	9
	2011.07.30 - 2012.07.29	18	18	3	3	6	5	15	16
	2010.07.30 - 2011.07.29	30	30	6	6	18	19	18	19
C1	2012.07.30 - 2013.07.29	0	0	1	1	0	1	0	0
	2011.07.30 - 2012.07.29	1	1	1	1	2	2	0	0
	2010.07.30 - 2011.07.29	12	12	2	2	13	15	1	1
C-e	2012.07.30 - 2013.07.29	1	1	0	0	0	0	1	1
	2011.07.30 - 2012.07.29	1	1	0	0	0	0	1	1
	2010.07.30 - 2011.07.29	1	1	0	0	0	0	1	1
C-I	2012.07.30 - 2013.07.29	114	114	4	4	73	88	44	52
	2011.07.30 - 2012.07.29	137	137	5	5	28	28	114	118
	2010.07.30 - 2011.07.29	173	173	7	8	44	46	137	142
C2	2012.07.30 - 2013.07.29	2	2	0	0	2	2	0	0
	2011.07.30 - 2012.07.29	1	1	2	2	1	1	2	2
	2010.07.30 - 2011.07.29	0	0	1	1	0	0	1	1
C3	2012.07.30 - 2013.07.29	0	0	2	2	1	1	1	2
	2011.07.30 - 2012.07.29	0	0	1	1	1	1	0	0
	2010.07.30 - 2011.07.29	0	0	5	5	5	5	0	0
C4	2012.07.30 - 2013.07.29	0	0	0	0	0	0	0	0
	2011.07.30 - 2012.07.29	5	5	0	0	5	5	0	0
	2010.07.30 - 2011.07.29	0	0	7	8	2	2	5	5
C5	2012.07.30 - 2013.07.29	4	4	0	0	3	3	1	1
	2011.07.30 - 2012.07.29	0	0	4	4	0	0	4	4

종류 C-W : 작성일 현재 미설정 종류형 펀드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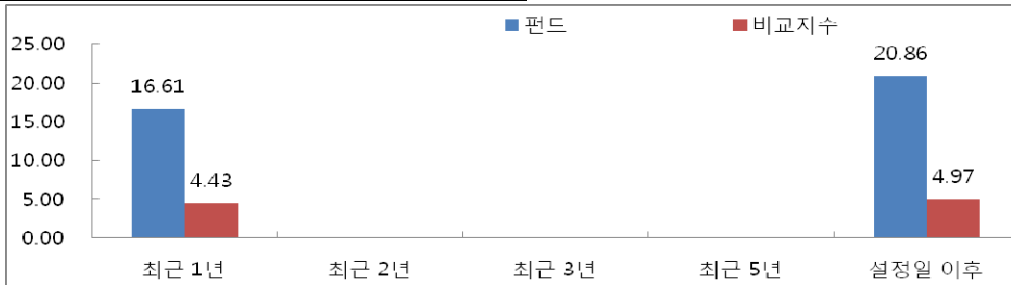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2.07.31 ~13.07.30	11.07.31 ~13.07.30	10.07.31 ~13.07.30	08.07.31 ~13.07.30	07.07.30 ~13.07.30
펀드	16.61	11.01	8.76	7.34	8.15
비교지수	4.43	-1.85	0.89	1.63	-0.77
종류 A	14.56	9.06	6.81	5.35	6.15
종류 C1	13.99	8.55	6.28	4.63	5.36
종류 C2	14.07	8.56			3.69
종류 C3	14.10	8.63			3.82
종류 C4	14.21	9.17			4.19
종류 C5	14.31				11.75
종류 C-e	14.21	8.66	6.37	4.84	3.18

종류 C-I	15.52	9.98	7.74	6.31	4.32
--------	-------	------	------	------	------

[해외 위탁자산운용회사 변경 후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2.07.31 ~13.07.30			
펀드	16.61				20.86
비교지수	4.43				4.97
종류 A	14.56				18.75
종류 C1	13.99				18.22
종류 C2	14.07				18.23
종류 C3	14.10				18.28
종류 C4	14.21				18.98
종류 C5	14.31				18.50
종류 C-e	14.21				18.36
종류 C-I	15.52				19.74

(주 1)비교지수 : MSCI EM Index 95% + 콜금리 5%

(MSCI 지수: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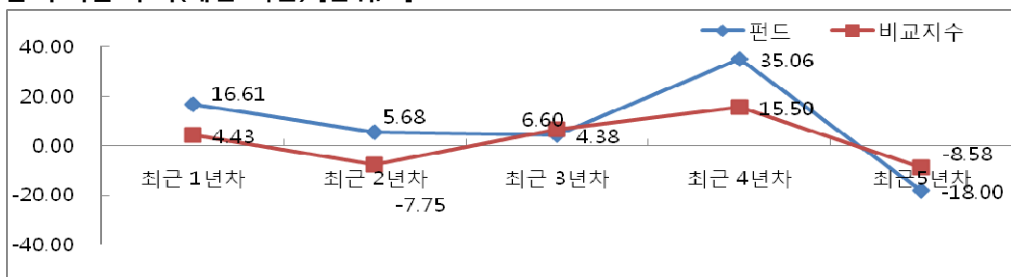
이머징 지역의 선별된 우량주 위주로 구성되어 지수화한 MSCI EM Index는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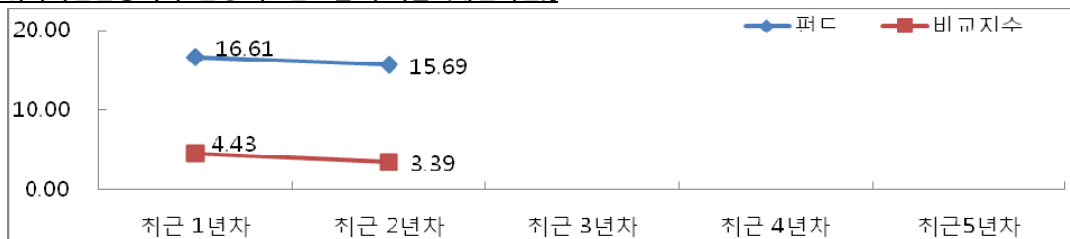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2.07.31 ~13.07.30	11.07.31 ~12.07.30	10.07.31 ~11.07.30	09.07.31 ~10.07.30	08.07.31 ~09.07.30
펀드	16.61	5.68	4.38	35.06	-18.00
비교지수	4.43	-7.75	6.60	15.50	-8.58
종류 A	14.56	3.82	2.46	32.60	-19.68
종류 C1	13.99	3.36	1.90	31.47	-20.56
종류 C2	14.07	3.32	-6.98		
종류 C3	14.10	3.43	-6.81		
종류 C4	14.21	4.34	-6.88		
종류 C5	14.31	9.01			
종류 C-e	14.21	3.39	1.92	31.81	-20.15
종류 C-I	15.52	4.71	3.40	33.80	-18.85

[해외 위탁자산운용회사 변경 후 연도별 수익률 (세전기준)]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2.07.31 ~13.07.30	12.01.01 ~12.07.30			
펀드	16.61	15.69			
비교지수	4.43	3.39			
종류 A	14.56	14.53			
종류 C1	13.99	14.30			
종류 C2	14.07	14.24			
종류 C3	14.10	14.29			
종류 C4	14.21	15.24			
종류 C5	14.31	14.40			
종류 C-e	14.21	14.29			
종류 C-I	15.52	15.08			

(주 1) 비교지수 : MSCI EM Index 95% + 콜금리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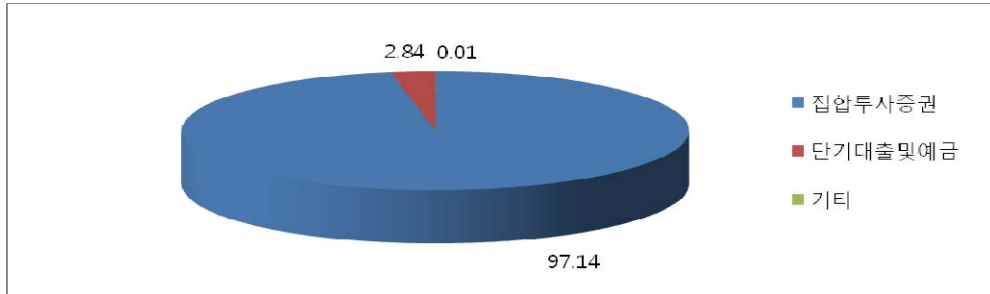
(MSCI 지수: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

이머징 지역의 선별된 우량주 위주로 구성하여 지수화한 MSCI EM Index 는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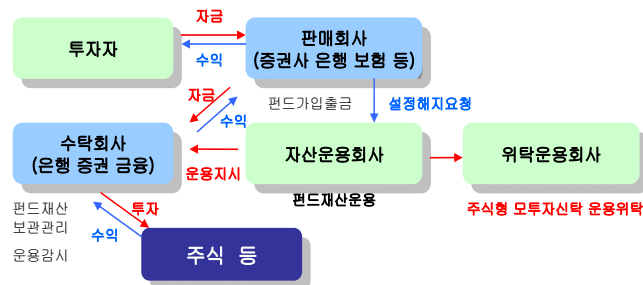
[2013.07.29 현재 / 단위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63	0	0	0	0	0	2	0	65
	(0.00)	(0.00)	(0.00)	(97.14)	(0.00)	(0.00)	(0.00)	(0.00)	(0.00)	(2.84)	(0.01)	(100.00)
합계	0	0	0	63	0	0	0	0	0	2	0	65
	(0.00)	(0.00)	(0.00)	(97.14)	(0.00)	(0.00)	(0.00)	(0.00)	(0.00)	(2.84)	(0.01)	(100.00)

-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 (주 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펀드의 운용구조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도이치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서린동 영풍빌딩 19 층 02)724-7400 홈페이지: www.dws-korea.com
회사연혁	2002년 2월 22일 설립 2002년 6월 14일 투자자문업 허가(등록일) 2002년 6월 14일 투자일임업 허가(등록일) 2002년 6월 17일 투자신탁운용업 허가(등록일) 2009년 2월 4일 사명변경 (도이치투자신탁운용 -> 도이치자산운용)
자본금	19,410,825,000 (원)
주요주주현황	Deutsche Asset Management Group Limited (국적:영국, 단독주주)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자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항목	2013.03.31	2012.03.31
현금및예치금	14,580	18,543
매도가능증권	505	505
유형자산	156	92
기타자산	3,263	5,276
자산총계	18,504	24,416
기타부채	6,349	7,106
부채총계	6,349	7,106
자본금	19,411	19,411
자본잉여금	1,678	1,678
이익잉여금	-8,934	-3,779

요약손익계산서

항목	2012.04.01 ~2013.03.31	2011.04.01 ~2012.03.31
영업수익	10,073	14,430
영업비용	14,791	13,940
영업이익	-4,718	490
영업외수익	0	45
영업외비용	356	410
경상이익	-5,074	126
특별이익		
특별손실		
세전순이익	-5,074	126

자본총계	12,155	17,310
부채및자본총계	18,504	24,416

법인세비용	81	82
당기순이익	-5,155	44

라. 운용자산 규모

[2013.07.30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 부동산파 생	특별자산 및특별자 산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 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1,265	94	163	0	1,823	0	0	3,575	0	0	0	6,919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업무의 위탁]

해당사항 없음

* 위 해외위탁운용사로의 업무위탁은 2014년 2월 26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업무위탁계약기간의 종료, 업무위탁계약의 해지 등 일정 사유 발생시 위탁운용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펀드매니저는 위탁회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교체될 수 있습니다.

※해외위탁운용사에 대한 위탁운용비용은 운용보수에서 지급합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신한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대경빌딩 120
전화번호	02-2151-7809
홈페이지	www.shinhanbank.com

(1) 주요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신탁업자의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신탁업자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 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 제268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⑧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 아이타스 (주)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연락처	02- 2168-0400

회사연혁	설립일: 2000년 6월 15일
홈페이지	http://www.shinhanaita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 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삼천리빌딩 2층	서울시 종로구 을곡로 88 삼환빌딩 4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4층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bond.co.kr	www.koreaap.com	www.nicepni.com

나. 주요 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중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따라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ㄱ)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ㄴ)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ㄷ)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ㄹ)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 법 제190조 6항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는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 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단, 법 193조에 따라,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 실적에 관해서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수익자총회사항포함),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비교지수 변경 및 이에 준하는 중요 투자전략의 변경은 아래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공시일로부터 1 개월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이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환매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 2015.01.01)
 - ① 수익자가 「국가재정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기금관리 주체인 경우 (제 13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 ② 수익자가 법 제 251 조제 1 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인 경우
 - ③ 투자신탁이 최초 설정일부터 1 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④ 투자신탁의 수익자총수가 1 인이 된 날부터 1 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수시공시의 절차에 따라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가 발생한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집합투자업자가 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채무를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 제 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 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합니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 3) 투자신탁의 해지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의 내용을 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에 포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합니다.

- **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에 이 투자신탁의**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2)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내용을 자투자신탁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자투자신탁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 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광고를 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dws-

korea.com),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 87 조제 2 항 및 3 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 제 87 조제 7 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87 조제 7 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최근 1년간) [단위:백만원]

최근 1년간 해당거래 발생내역 없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아래의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해관계인의 범위]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최근 1년간 해당거래 발생내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배점기준	평가요소
정보제공능력	50%	- 시장 및 업종별, 종목별 분석자료 제공 - 실시간 수급동향 제공 능력 - 각종 문의 시 적시 대응 능력 - 관련 세미나, 기업탐방, IR 등의 기회 제공 - 파생시장 분석자료 제공 - 현/선물 차익거래 분석정보 제공
매매체결능력	30%	- 호가의 정확성, 신속성, 적정성
결제이행능력	10%	- 결제 업무 상의 정확성 및 신속성 -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 - 결제 전반에 필요한 지식 보유 여부
중개수수료	10%	- 적정 수수료 책정 여부

2) 평가방법

- 매분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함
- 평가주체는 담당운용부에서 하되 연관부서 참여가능
- 채무증권의 경우 장외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매매시 최우선호가를 제시하는 거래사를 우선적으로 선정 가능

3) 약정배분기준

- 약정배분기준은 거래금액 및 거래 수량을 기준으로 정함
- 평가결과에 따라 복수의 증권사/은행 및 선물사 선정

- 채무증권과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 : 증권사/은행은 15-20 개사, 선물사는 4-10 개사 선정
-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 증권사/은행 4-10 개사, 선물사는 4~10 개사 선정
- 지분증권과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 : 증권사 10 개사, 선물사는 4~10 개사 선정
- 상기 선정된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75%이상 배정함
- 특정회사 최대 배정가능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함
 - 채무증권 : 총 약정금액의 30%이내
 -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 : 총 약정금액의 35% 이내
 -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 총 약정금액의 35% 이내
 - 지분증권 : 총 약정금액의 30%이내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 : 총 약정금액의 35% 이내

5.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없음

[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